

요약

2025년 1분기에는 총 9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.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보험사기 전력자의 모집활동 제한, ② 타사 간 부당 승환 시 계약자 권리 보호, ③ 교차모집 허용 범위 확대, ④ 보험설계사 가중제재 요건 명확화 및 경징계 근거 마련, ⑤ 법인보험대리점 및 임원 제재 강화, ⑥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시가 평가, ⑦ 기존 계약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, ⑧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단일화 등임

○ 2025년 1분기에 총 9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

- 제22대 국회에서는 총 13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며, 그중 통과된 건은 아직 없음
- 2025년 1분기에는 총 9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바, 주요 내용은 <표 1>과 같으며, 모집, 제재, 자산운용, 손해사정사 자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

○ 모집과 관련하여서는 (i) 보험사기 전력자의 모집활동을 제한하고 (ii) 타사 간 부당 승환 시 계약자 권리를 보호하며 (iii) 교차모집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됨

-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과 제재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(의안번호 2208266), 보험설계사가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및 「형법」 제347조(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)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함(의안번호 2208401)
- 2024년부터 신용정보원에 '비교안내시스템'이 구축된 점을 고려하여, 타사 간 부당 승환에 대해서도 보험계약 부활 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(의안번호 2208233)
-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의 자회사 보험상품도 모집이 가능하도록 교차모집을 허용함(의안번호 2207709)

○ 제재와 관련하여서는 (i) 보험설계사의 가중제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(ii)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리화하고 (iii) 법인보험대리점과 임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음

- 보험설계사에 대한 가중제재 처분 대상을 최근 5년간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제재를 받는 경우로 제한하고,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주의·경고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(의안번호 2207709, 의안번호 2208206)
- 보험회사 기초서류 위반 시 과징금 산출 기준을 수입보험료에서 부당이득금으로 변경하고 책임준비금 과다 산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함(의안번호 2207709)
- 설계사, 대리점, 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 취소사유를 금융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으로 확대하고, 법인보험대리

점 임원 결격 기간을 형 집행 종료 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(의안번호 2208983)

- 자산운용과 관련하여서는 (i)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시가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, (ii) 신용공여 자에게 매 분기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음
 -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총자산, 자기자본, 채권·주식 보유금액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, 자산운용비율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(의안번호 2208209)
 -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고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도 매 분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의무화함(의안번호 2208666)
- 그 밖에 손해사정사 자격을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 없이 단일한 자격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음 (의안번호 2208090)
- 이상의 개정안을 종합해 보면, 보험사기에 가담한 모집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, 그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보임

〈표 1〉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(2025년 1~3월)

번호	접수정보	주요내용	분류
1	2207709 2025. 01. 22. 김상훈 의원	<p>[배경]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모자회사 간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,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및 보험설계사 제재 규정 운영 개선이 요구됨</p> <p>[개정사항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의 자회사 보험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교차모집 허용 (안 제85조 제3항) 2. 보험설계사의 가중제재 대상을 최근 5년간 보험업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로 제한하고(안 제86조 제1항제2항), 경미한 법규 위반 시 주의경고문책 등의 경징계를 허용함(안 제136조) 3.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위반 시 부당이득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(안 제196조), 책임준비금 과다적립 시 과태료를 면제함(안 제209조) 	모집 제재
2	2208090 2025. 02. 12. 이강일 의원	<p>[배경] 손해사정사 자격이 하위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세분화되어 감독기관이나 보험회사의 관리가 어렵고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</p> <p>[개정사항]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, 손해사정사를 업무영역 구분 없이 단일한 자격으로 운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186조 제2항)</p>	손해사정
3	2208206 2025. 02. 17. 강준현 의원	<p>[배경] 현행 「보험업법」은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 시 주의·경고 조치가 불가능하여 개인 보험대리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. 또한, 가중제재 기산점이 없어 과거 처분 까지 포함해 등록취소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</p> <p>[개정사항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험설계사가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,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가중제재 기준을 마련함(안 제86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5호) 2.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136조 제1항) 	제재

〈표 1〉 계속

번호	접수정보	주요내용	분류
4	2208209 2025. 02. 17. 차규근 의원	<p>[배경] 보험회사는 자산운용비용 산정 시 채권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타 금융업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, 시가 반영 기준과의 불일치로 자산운용비용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</p> <p>[개정사항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용 산정 시 총자산, 자기자본, 채권·주식 소유금액을 재무제표상의 시가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함(안 제106조 제4항) 2. 자산운용비용을 초과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여 보험계약자의 자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함(안 제106조의2 신설) 	자산운용
5	2208233 2025. 02. 18. 강준현 의원	<p>[배경] 부당한 계약 승환 시 보험계약자에게 부할 청구 및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, 같은 보험회사 내 계약에만 적용되고 있음</p> <p>[개정사항] 2024년 신용정보원의 ‘비교안내시스템’ 구축으로 보험모집자가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 정보를 조회·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타 사간 부당한 승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부할 청구 및 취소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함(안 제97조 제4항)</p>	모집 (부당승환)
6	2208266 2025. 02. 19. 강준현 의원	<p>[배경]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사기에 가담·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,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모집종사자 활동을 제한할 기준이 미비하여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</p> <p>[개정사항]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의 보험사기행위 정의를 준용하여,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(보험설계사,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 임원 포함)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 규정을 보완함(안 제84조 제87조의2, 제89조의2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 등)</p>	모집 (보험사기)
7	2208401 2025. 02. 25. 박상혁 의원	<p>[배경] 보험사기 범칙은 「보험사기 특별법」에 따라 규제되지만, 현행법상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위법판결을 받은 자가 별다른 행정처분 없이 활동 가능함</p> <p>[개정사항] 보험사기 관련 법률 「보험사기 특별법」 및 「형법」 제347조(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)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함(안 제84조 제2항, 제86조 제3항 단서 신설)</p>	모집 (보험사기)
8	2208666 2025. 03. 05. 주호영 의원	<p>[배경] 2018년 금융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부족 및 안내 방식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함</p> <p>[개정사항]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체결한 자에게 매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활성화를 도모함(안 제110조의3 제2항)</p>	자산운용 (금리인하요구)
9	2208983 2025. 03. 17. 김상훈 의원	<p>[배경] 보험업의 재판분리 가속화로 보험대리점(GA)이 증가하고 대형화되는 추세이나,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은 미흡함</p> <p>[개정사항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보험설계사, 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및 등록 취소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함(안 제84조) 2.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결격사유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확대하고, 형 집행 종료 및 면제 후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(안 제87조의2) 3. 보험대리점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196조) 	제재

주: 1) 2025. 1. 1.~2025. 4. 3.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신규 등재된 법안임

2) 접수정보는 의안번호, 제안일자, 대표발의자임

자료: 의안정보시스템